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861호 2023. 11. 9.(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494호 용당(항공MRO)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재공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3-1497호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4

○ 사천시 공고 제2023-1512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 사천시 공고 제2023-1513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입법예고 - 33

○ 사천시 공고 제2023-1514호 2022년 동림3 수도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 47

○ 사천시 공고 제2023-151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53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61호

사천시 공고 제2023-1494호

용당(항공MRO)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재공고

* 입찰신청자격: 공급 공고일 기준 주소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자(개인, 법인)
* 금회 공급하는 용당(항공MRO)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명의변경)가 제한되오니 본 공고문 내 '11. 명의변경'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오니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 신중히 검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급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 수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예정가격(원)	입찰보증금	대금납부조건
단독주택(점포겸용)	14필지	334 ~ 523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192,217,000~ 320,927,500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급토지 세부내역 등은 공급 공고 첨부파일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본인 입찰예정가격의(공급예정가격이 아님에 유의) 5% 이상이며, 입찰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 상에서 입찰보증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일반실수요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1인당 신청 가능 필지 수 제한 없음 [단, 동일인(법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중복신청 불가]

※ 2인 이상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인허가 문제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제는 불가하므로 입찰보증금 입금 전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를 포함한 관련 규제사항 및 본 공고문의 기타 유의사항 확인 및 관계기관 문의 등을 거친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방법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개 찰	결과게시	계약체결
제한경쟁 입 찰	2023. 11. 9.(목) 09:00 ~ 12. 1.(금) 17:00	2023. 12. 4.(월) 10:00	2023. 12. 6.(수) 10:00	2023. 12. 11.(월) ~ 12. 12.(화) 10:00~17:00 (12:00 ~ 13:00 제외)
장 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 상기 입찰 신청은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는 온비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안내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는 인터넷을 이용, 토지의 입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개찰 결과는 온비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는 사천시 홈페이지 공급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1588-5321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 공통사항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고(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온비드의 인터넷 신청은 종료 시각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개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 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라.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 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이 신청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필지 분할 불가)

바.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신청인과 계약체결인 명의는 같아야 합니다.

아. 공동신청인(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공동신청자 중 1인의 동일 필지 개별입찰(신청)은 온비드 시스템상 불가], **동일인(법인 포함)이 동일 필지에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인(법인)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경우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 법인의 대표(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 중복신청 등 무효 처리 시 입찰보증금이 우리시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급가격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 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 토지의 장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 입찰 신청절차,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신청절차

【 온비드(http://www.onbid.co.kr) 입찰 신청절차 】

1) 단독신청의 경우

온비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 신청 토지 선택 ➡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2) 공동신청의 경우

온비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 전자서명** ➡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 이하 “단독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 입찰 신청 시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 납부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 마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종료 시각에 정확히 시스템이 중지되며 입찰보증금이 납부 마감 시간 이후에 입금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을 신청하고자 하면 입찰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납부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에 입금되거나 납부 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신청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은 공고된 일시에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급예정가격 미만의 입찰가격은 무효 처리되오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 건별 접수증에 기재된 납부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 기한 내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 입금, 납부 마감시간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되었을 때 납부 기한 내에 입금된 금액만 합산하며 납부 기한 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격의(공급예정가격이 아님에 유의) 5% 이상이며, 입찰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 상에서 입찰보증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시) 공급예정가격이 291,798,000원, 입찰예정가격이 300,000,000원 경우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격(300,000,000원)의 5%인 15,000,000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 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마. 1인(법인)이 수 개의 필지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각 건별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분할 입금된 금액으로 각 필지에 입찰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분할이나 입금 취소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입금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명의로 입금하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보증금은 과오 납부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개찰 이후 당첨/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 반환 기간 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신청접수 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공동 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개찰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다. 반환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급 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고 개찰 이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의 반환 기간 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시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체결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기간 내 미계약 시 입찰보증금은 일체의 예외 없이 우리시로 귀속 처리되오니 반드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신청 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8 구비서류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개 인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10%)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위임 시 위임장 1부,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추가)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 인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1부 및 사용인감) - 위임 시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추가)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계약금 납부계좌	농 협 839-01-012561, 예 금 주: 사천시 징수과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 모든 서류는 공급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며, 공동신청자는 공동신청자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가.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10%이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됩니다.**

나. 계약체결 기간까지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일은 토지공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기간의 마지막 날로 일괄 지정합니다.**

9 대금납부 방법

■ 대금납부조건: 일시납부

구 분	계 약 금	잔 금
납부비율	토지 대금의 10%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9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대금납부(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납부 기한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좌 입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대금(잔금)이 납부 기한까지 미완납 된 경우에는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시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 가능 시기: 2023. 12. 28일 이후 가능

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상기와 같으나, 토지 대금 완납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당초 통보한 토지사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면적정산

가. 향후 부득이하게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이 경우 취득세 등도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적정산 및 가격정산 등으로 매수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시 토지 대금이 미완납 된 경우에는 미납 대금(잔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합니다.

■ 소유권 이전

가. 소유권 이전은 토지 대금이 완납된 후에 가능하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합니다.

11 명의변경

가.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명의변경 시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12 주요세금 등 신고사항

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우리시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의 **최종 토지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임을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토지대금 완납일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 내용만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며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 법령 확인 및 과세기간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최초 계약체결 시 대상 용지의 거래에 대한 신고는 우리시에서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명의변경(매매 원인)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전 공급공고문, 매매계약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내용(변경 포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건축 시에는 이주단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다.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매수인은 해당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수로 등), 이주단지 내외 입지 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해당 토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 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토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경사 정도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 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시 해당 구간 관리주체인 우리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 관계 법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이주단지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가로등, 공원, 필지 주변 보도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입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성 관련 사항

가.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의 행정절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사 관련 도면, 건축 규제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반 시설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나. 용당(항공MRO) 이주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에 기재된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허용 용도 외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및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 –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4층
		• 최저높이: –

다. 용당(항공MRO) 이주단지는 지중화 사업 해당되지 않아 전주, 전선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건축공사를 위한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설계 시 시설물 관리기관 및 우리 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기반 시설(우수, 오수, 상수 등 지하 매설물 포함)은 이주단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 연결공사 시 우리시에 입회를 요청하고 연결 후 필요시 기반 시설 복구 확인(지하 매설물 CCTV 촬영제출 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마. **해당 토지(공통)**는 **성토 구간(발파암 되메우기)과 절토 구간(계획고 하부 암반 존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굴착 시 암반이 노출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굴착으로 인해 노출되는 암반 등 지반처리에 대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토지 일부 구간 보강토옹벽을 설치함에 따라 지반 보강재가 존재하므로 지반처리에 대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타 기관 시행 시설은 기관(업체)별로 공급계획, 공급 일정 및 인입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매수인은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 등을 확인 후 신청에 응해야 하고, 필지 주변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지 요구 등을 우리시에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하자 발생 시 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자. 공공시설물 점·사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일부 필지 전면에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시설물, 소화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관련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토지 주변 환경 및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시설물 등), 지상 노출물(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소화전, 및 표지판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부,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은 행위원인자 부담으로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카. 해당 토지 전면에 기반 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축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기반 시설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전기공급 관련 시설, 공공시설물, 기반 시설(지장물 포함)의 변경 요구 및 관련 비용 등을 우리 시에 청구(또는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매수인 비용 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해야 합니다.

파. 건축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해당 토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우기시 해당 토지 내 토사가 토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토사 유출 방지 측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 해당 토지 주변의 도로 등에 매설된 지하 매설물이 건축공사 터파기(주변 침하 등)로 인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 대책 등을 수립하여 터파기 등 시공하여야 합니다.

갸. 해당 토지 공사로 인한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자재 적치, 차량주차 등은 해당 토지 외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냐. 해당 토지 매수 이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댜. 대지조성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각종 도면(공사계획평면도) 등은 우리 시 투자유치산단과에 방문 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055)831-346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2023. 11. 9.

사 천 시
(투자유치산단과)

사천시 공고 제2023-1497호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제정(2015. 4. 7.) 이후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용료 미개정으로 인한 공과금 및 물가상승 미반영으로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요금 현행화를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요금인상 및 이용구간 세분화(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6, FAX : 831-603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분	대 상	금 액 (원)	비고
일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2,000	
	노인 (70세 이상)	4,000	
	대인 (7~69세)	5,000	
	1일 2회 (전연령)	1,000	
월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40,000	
	80세 이상		
	70~79세	60,000	
	대인 (7~69세)	70,000	
	가족	80,000	※ 인원제한 없음
	헬스	무료	

※ 월 이용자는 일 이용횟수 제한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3.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분	금 액(원)	비고
아 동	2,000	7세 이하
노 인	3,000	70세 이상
일 반 인	4,000	
월 이 용 자	월50,000	일반인
	월30,000	일반인을 제외한 이용자 (아동, 노인)

개 정 안

[별표 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분	대 상	금 액 (원)	비고
일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2,000	
	노인 (70세 이상)	4,000	
	대인 (7~69세)	5,000	
	1일 2회 (천연렴)	1,000	
월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40,000	
	80세 이상		
	70~79세	60,000	
	대인 (7~69세)	70,000	
	가족	80,000	※ 인원제한 없음
	헬스	무료	

※ 월 이용자는 일 이용횟수 제한 없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고 제2023-1512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망사천택시의 명확한 근거 및 운영 마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형(DRT)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산처리 방법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1호)

나. 희망사천택시 법적 종류 추가 (안 제2조제2호)

다. 지원비용 결정 및 지급 등 정비 (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1, FAX: 831-60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을”을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희망사천택시”란”을 ““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을대표”란「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 이라 한다)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희망사천택시운영 시 예산 부족”을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스템의 전산 오류, 운행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비용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희망사천택시 운행기록 제출서(제6조제2항 관련)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업 체</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3"></td></tr>
<tr><td>차 량</td><td colspan="6"></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탑승비용
신청내역</td><td>탑승자
(마을명)</td><td>출발지</td><td>도착지</td><td colspan="3">지원금 산출내역(원)</td></tr>
<tr><td></td><td></td><td></td><td>운행요금</td><td>주민부담</td><td>지원신청</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예 금 계 좌</td><td>은행명</td><td>예금주</td><td colspan="3">계 좌 번 호</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able>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요금(운행) 영수증
2. 운행일지

사 천 시 장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사천시가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1.---------- ----------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
2.“희망사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
3.“마을대표”란「사천시 리·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리·통장을 말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
<신 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마을 2. (생 략)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현행과 같음)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망사천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운영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월별로 지급한다.	야 한다. ---------- ----------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스템의 전산 오류, 운행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비용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고 제2023-1513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14조)

다. 자동차의 운행 연한에 관한 내용(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 (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0, FAX: 831-60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천시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천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3.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 및 운영 사업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관 련 법 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 · 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 · 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 · 소형 · 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 · 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사천시 공고 제2023-1514호

2022년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동림3 수도골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2년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동림3수도골지구: 80필지, 35,399.5㎡
4. 지적확정조서: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6. 공람장소: 사천시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2, 2843, 2378, 2355)

사 천 시 공 보

제861호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	동림동	178-4	도로	351.0	-	동림동	178-4	도로	979.2	628.2	0.0	사천시		
2	-	동림동	178-7	대	72.0	-	동림동	178-7	대	72.0	0.0	0.0	국(기획재정부)		
3	-	동림동	181-7	임야	1,221.0	-	동림동	181-7	임야	1,369.4	148.4	0.0	김*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거리길 **	
4	-	동림동	181-12	도로	110.0	-	동림동	181-12	도로	1,009.4	0.0	221.6	사천시		
			181-23	도로	492.0										
			181-85	도로	451.0										
			181-86	도로	178.0										
5	-	동림동	181-15	전	711.0	-	동림동	181-15	전	711.0	0.0	0.0	하*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	
6	-	동림동	181-17	전	1,058.0	-	동림동	181-17	전	1,058.0	0.0	0.0	김*자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로 **	
7	-	동림동	181-18	전	1,438.0	-	동림동	181-18	전	1,438.0	0.0	0.0	김*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8	-	동림동	181-19	도로	91.0	-	동림동	181-19	도로	454.6	363.6	0.0	사천시		
9	-	동림동	181-24	묘지	1,071.0	-	동림동	181-24	묘지	1,071.0	0.0	0.0	강*수	**	
10	-	동림동	181-25	전	235.0	-	동림동	181-25	전	235.0	0.0	0.0	김*순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11	-	동림동	181-26	전	199.0	-	동림동	181-26	전	199.0	0.0	0.0	안*아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12	-	동림동	181-33	전	446.0	-	동림동	181-33	전	446.0	0.0	0.0	김*이	선구리 **-*	
13	-	동림동	181-38	전	937.0	-	동림동	181-38	전	975.4	38.4	0.0	김*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거리길 **	
14	-	동림동	181-41	전	1,795.0	-	동림동	181-41	전	1,795.0	0.0	0.0	최*운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 ***-*	
15	-	동림동	181-59	전	1,061.0	-	동림동	181-59	전	1,061.0	0.0	0.0	최*만	경상남도 사천시 강청길 **-**	
16	-	동림동	181-70	도로	6,088.0	-	동림동	181-70	도로	6,838.0	750.0	0.0	사천시		
17	-	동림동	181-87	전	26.0	-	-	-	-	말소	0.0	26.0	김*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18	-	동림동	182	묘지	112.0	-	동림동	182	묘지	161.4	49.4	0.0	사천시		
19	-	동림동	183-1	대	73.0	-	동림동	183-1	대	57.2	0.0	15.8	김*숙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	
20	-	동림동	183-2	대	127.0	-	동림동	183-2	대	140.0	13.0	0.0	김*숙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1	-	동림동	183-3	대	192.0	-	동림동	183-3	대	194.8	2.8	0.0	김*숙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	
22	-	동림동	184-1	대	126.0	-	동림동	184-1	대	126.0	0.0	0.0	김*화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23	-	동림동	184-2	대	11.0	-	-	-	-	말소	0.0	11.0	안*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	
24	-	동림동	184-3	대	149.0	-	-	-	-	말소	0.0	149.0	안*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	
25	-	동림동	184-4	대	122.0	-	동림동	184-4	대	165.1	43.1	0.0	주*환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26	-	동림동	184-5	도로	423.0	-	동림동	184-5	도로	1,431.7	886.7	0.0	사천시		
			185-6	도로	122.0										
27	-	동림동	185	대	644.0	-	동림동	185	대	596.1	0.0	47.9	김*헌, 양*석		
28	-	동림동	185-1	대	40.0	-	동림동	185-1	대	40.0	0.0	0.0	동림동 수도골 마을회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로 **	
29	-	동림동	185-3	대	205.0	-	동림동	185-3	대	205.0	0.0	0.0	김*재, 김*숙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	
30	-	동림동	185-5	대	22.0	-	동림동	185-5	대	34.4	12.4	0.0	사천시		
31	-	동림동	185-7	대	46.0	-	동림동	185-7	대	30.5	0.0	15.5	이*우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	
32	-	동림동	185-8	대	17.0	-	동림동	185-8	대	34.6	17.6	0.0	사천시		
33	-	동림동	185-13	대	5.0	-	동림동	185-13	대	32.4	27.4	0.0	사천시		
34	-	동림동	185-16	전	133.0	-	-	-	-	말소	0.0	133.0	김*헌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35	-	동림동	186	대	1,262.0	-	동림동	186	대	269.3	28.6	0.0	평산신씨문희공파구호종중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	
								186-2	대	205.7					
								186-3	대	156.2					
								186-4	대	140.5					
								186-5	대	131.4					
								186-6	대	115.3					
								186-7	대	81.3					
								186-8	대	190.9					

사 천 시 공 보

제861호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36	-	동림동	186-1	대	80.0	-	-	-	-	말소	0.0	80.0	사천시		
37	-	동림동	188	대	387.0	-	동림동	188	대	299.2	0.0	87.8	평산신씨문희공파구호종중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	
38	-	동림동	188-1	전	2,430.0	-	동림동	188-1	전	2,430.0	0.0	0.0	김*영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번길 **-**	
39	-	동림동	188-2	전	393.0	-	동림동	188-2	전	43.2	0.0	349.8	사천시		
40	-	동림동	188-3	대	56.0	-	동림동	188-3	대	163.1	107.1	0.0	이*균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41	-	동림동	188-4	전	826.0	-	동림동	188-4	전	1,016.0	190.0	0.0	김*규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길 **	
42	-	동림동	188-5	전	195.0	-	동림동	188-5	전	195.0	0.0	0.0	김*영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번길 **-**	
43	-	동림동	188-6	대	69.0	-	동림동	188-6	대	69.0	0.0	0.0	하*관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	
44	-	동림동	188-7	대	352.0	-	동림동	188-7	대	336.8	0.0	15.2	송*임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안길 **	
45	-	동림동	188-8	대	162.0	-	동림동	188-8	대	297.2	135.2	0.0	박*남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안길 **-*	
46	-	동림동	188-9	대	43.0	-	-	-	-	말소	0.0	43.0	사천시		
47	-	동림동	188-10	대	182.0	-	동림동	188-10	대	230.2	48.2	0.0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길 **	
48	-	동림동	188-11	대	36.0	-	-	-	-	말소	0.0	36.0	사천시		
49	-	동림동	188-12	대	268.0	-	동림동	188-12	대	268.0	0.0	0.0	최*숙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	
50	-	동림동	188-13	대	89.0	-	동림동	188-13	대	13.0	0.0	76.0	사천시		
51	-	동림동	188-14	대	66.0	-	동림동	188-14	대	85.2	19.2	0.0	김*태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52	-	동림동	188-15	대	46.0	-	동림동	188-15	대	72.6	26.6	0.0	김*환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53	-	동림동	188-16	대	198.0	-	동림동	188-16	대	198.0	0.0	0.0	사천시, 송*이, 이*길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54	-	동림동	188-17	대	73.0	-	동림동	188-17	대	73.0	0.0	0.0	박*윤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55	-	동림동	188-18	대	73.0	-	동림동	188-18	대	264.7	191.7	0.0	신*자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56	-	동림동	188-19	전	50.0	-	동림동	188-19	전	111.3	61.3	0.0	사천시		
57	-	동림동	188-20	전	69.0	-	동림동	188-20	전	50.7	0.0	18.3	사천시		
58	-	동림동	188-21	전	122.0	-	동림동	188-21	전	122.0	0.0	0.0	김*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59	-	동림동	188-22	전	26.0	-	동림동	188-22	전	66.7	40.7	0.0	사천시		
60	-	동림동	188-23	전	46.0	-	동림동	188-23	전	53.9	7.9	0.0	사천시		
61	-	동림동	188-24	전	182.0	-	동림동	188-24	전	29.5	0.0	152.5	신*자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	
62	-	동림동	188-25	전	40.0	-	동림동	188-25	전	106.9	66.9	0.0	사천시		
63	-	동림동	189-2	대	4.0	-	-	-	-	말소	0.0	4.0	사천시		
64	-	동림동	189-3	대	46.0	-	동림동	189-3	대	66.3	20.3	0.0	사천시		
65	-	동림동	189-4	대	192.0	-	동림동	189-4	대	181.7	0.0	10.3	강*혜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안길 **	
66	-	동림동	189-5	대	73.0	-	동림동	189-5	대	62.6	0.0	10.4	사천시, 송*달		
67	-	동림동	189-6	대	86.0	-	동림동	189-6	대	162.4	76.4	0.0	이*우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	
68	-	동림동	189-7	대	56.0	-	동림동	189-7	대	84.4	28.4	0.0	사천시		
69	-	동림동	189-9	도로	8.0	-	동림동	189-9	도로	20.1	12.1	0.0	사천시		
70	-	동림동	189-16	대	155.0	-	동림동	189-16	대	149.1	0.0	5.9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안길 **	
71	-	동림동	189-17	대	28.0	-	-	-	-	말소	0.0	28.0	사천시		
72	-	동림동	189-18	대	2.0	-	-	-	-	말소	0.0	2.0	사천시		
73	-	동림동	189-20	대	1.0	-	-	-	-	말소	0.0	1.0	사천시		
74	-	동림동	190-4	대	2,254.0	-	동림동	190-4	대	246.9	0.0	1731.2	사천시		
								190-5	대	171.0					
								190-6	대	104.9					
75	-	동림동	419	구거	1,428.0	-	동림동	419	구거	619.0	0.0	495.9	국(국토교통부)		
								419-5	구거	125.5					
								419-6	구거	144.7					
								419-7	구거	42.9					
76	-	동림동	산57-5	임야	191.0	-	동림동	178-16	임야	191.0	0.0	0.0	국(기획재정부)		
77	-	동림동	산57-11	임야	397.0	-	-	-	-	말소	0.0	397.0	사천시		

동림3수도골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78	-	동림동	산57-27	도로	68.0	-	동림동	178-17	도로	99.0	31.0	0.0	국(국토교통부)		
79	-	동림동	산59-1	임야	298.0	-	동림동	188-26	임야	298.0	0.0	0.0	김*영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번길 **-**	
80	-	동림동	산59-8	임야	1,783.0	-	동림동	188-27	임야	1,783.0	0.0	0.0	김*영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번길 **-**	

사천시 공고 제2023-151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2023. 11. 9.(목) 09:00 ~ 11. 13.(월) 18: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사천시 건설과(☎055-831-3278)로 방문 접수만 가능**[접수일: 2023. 11. 14.(화) 10:00 ~ 17:00]**

2.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참가자격: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참가자 선정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첨부파일 참조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평가기준 증빙서류) 1부

4.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주체: 사천시장(건설과)
   다. 시 공 사: 삼우개발㈜ 대표자 강도경
   라. 사업개요
      1)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일원
      2) 사 업 량: 배수펌프장 1식, 배수로 공사 등
      3) 공사기간: 2023. 2. 1. ~ 2024. 1. 31.
         ※ 현장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공 사 비: 1,320백만원

5.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배수지 포함)
   가. 배수펌프장 공사 정기안전점검 3회-7,500천원(1회 당 2,500천원)
   나. 배수펌프장 초기점검 1회-4,500천원
   다. 5미터 이상 구조물(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점검 2회- 3,400천원
      (1회당 1,700천원)
   라. 안전점검 총예상비용: 15,400천원
      ※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에 따른 금액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 실적에 따라 정산

6. 유의사항
   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및 장비 보유현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시기 제출된 서류로 서류 제출 생략
   나.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 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
   다.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정산
   마.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적용

사 천 시 공 보

제861호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3. 11.

사 천 시
(건 설 과)

사 천 시 공 보

제861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간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table>
<tr><th>평 가 항 목</th><th>배점</th><th colspan="3">평 가 방 법</th></tr>
<tr><th>합 계</th><th>100</th><th colspan="2">세부평가요소</th><th>배점</th></tr>
<tr><td rowspan="8">가. 참여기술인</td><td rowspan="8">50</td><td rowspan="3">책임기술인
(25)</td><td>등급</td><td>5</td></tr>
<tr><td>경력</td><td>10</td></tr>
<tr><td>실적(건수)</td><td>10</td></tr>
<tr><td rowspan="5">참여기술인
등급
(25)</td><td>특급:4점×인</td><td rowspan="5">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기술자
등급별
점수 측정</td></tr>
<tr><td>고급:3점×인</td></tr>
<tr><td>중급:2점×인</td></tr>
<tr><td>초급:1점×인</td></tr>
<tr><td rowspan="2">나. 유사용역 수행실적</td><td rowspan="2">30</td><td colspan="2">최근5년간 안전점검 실적</td><td>20</td></tr>
<tr><td colspan="2">최근5년간 안전점검 금액</td><td>10</td></tr>
<tr><td rowspan="2">다. 신 용 도</td><td rowspan="2">10</td><td colspan="2">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시정(-0.3),부실(-0.7),정지(30일마다 -0.2)]</td><td>7</td></tr>
<tr><td colspan="2">재정상태 건실도(신용등급)</td><td>3</td></tr>
<tr><td rowspan="2">라. 업무중복도</td><td rowspan="2">10</td><td colspan="2">책임기술인</td><td>6</td></tr>
<tr><td colspan="2">참여기술인</td><td>4</td></tr>
</table>

Ⅲ.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2〕의 평가기준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8.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11. 본 기준은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예. 참여기술자 경력 참여일로 평가, 업무중첩도 참여건수로 평가, 1억미만의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및 실적인정 기준금액 등)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유지관리 관련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365일을 1년으로 계산)

라.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안전점검 용역의 특성상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하며, 유사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용역수행실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5년 9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6.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8.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Ⅴ. 세부평가방법

1. 분야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5">가. 참여기술인</td><td>(1)책임기술인</td><td>25</td><td></td></tr>
<tr><td>(가)등급</td><td>5</td><t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td></tr>
<tr><td>(나)경력</td><td>10</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 분</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td></tr>
<tr><td>(다)실적
(최근5년간)</td><td>10</td><td>- 용역의 종류, 건수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tr><td>실 적</td><td>15건이상</td><td>15건미만
~13건이상</td><td>13건미만
~11건이상</td><td>11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5</td><td>9</td><td>8.5</td><td>8</td></tr></table></td></tr>
<tr><td>(2) 참여기술자</td><td>25</td><td></td></tr>
<tr><td>(가)등급</td><td>25</td><td>특급 : 4점 × 인원
고급 : 3점 × 인원
중급 : 2점 × 인원
초급 : 1점 × 인원
※ 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기술자등급별 점수 측정하며,
※ 25점 초과 시 만점(25점) 부과</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나. 용역수행실적</td><td>(1)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td><td>20</td><td>●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른다.

-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table><tr><td>실적</td><td>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
~2건이상</td><td>2건미만</td></tr><tr><td>점수</td><td>20</td><td>19</td><td>18</td><td>17</td><td>16</td></tr></table></td></tr>
<tr><td>(2)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td><td>10</td><td>-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table><tr><td>금 액</td><td>1억이상</td><td>1억미만
~9천이상</td><td>9천미만
~8천이상</td><td>8천미만
~6천이상</td><td>5천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td></tr>
</table>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과 관련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정(30일 미만일 경우 30일로 계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6	2.1	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중복도	(1)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6	5.2	4.4	3.6	2.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4	3.6	3.2	2.8	2.4

* 책임기술인 기준과 동일

사 천 시 공 보

제861호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구분	발주자가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수행중인 용역
증빙서류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으로 함.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3.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 예)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